#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54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한병도·임오경·김영배

민병덕 • 이해식 • 안도걸

정일영 · 서미화 · 강유정

이춘석 · 양부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 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신 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법률 제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1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 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 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 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 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 --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 명령 또는 -----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 입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입의무)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 사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1의3. (생 략) <신 설>

2. (생략) 4. • 5. (생략) ②・③ (생략)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
<u>다.</u>				

- 1. ~ 1의3. (현행과 같음)
- 2. 제1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을 거부한 보험회사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4.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